

##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

매년 1월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. 이번 호에서는 각 회사의 연말정산업무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해와 달라진 세법 규정과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을 안내하고, 다음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와 알아두면 유의한 사례 등을 제공하겠습니다.

자료제공 및 문의  
국세청 납세홍보과(02-397-1397)  
E-mail : ho25400@nts.go.kr

### ■ 소득세율 인하

2001년		
과제표준금액	세율	누진공제
1천만원 이하	10%	
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	20%	100만원
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	30%	500만원
8천만원 초과	40%	1,300만원
2002년		
1천만원 이하	9%	
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	18%	90만원
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	27%	450만원
8천만원 초과	36%	1,170만원

### ■ 근로소득공제 확대

2001년	
총 급여액	근로소득공제금액
500만원 이하	전 액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	500만원 +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	900만원 + 1,500만원 초과금액의 10%
4,500만원 초과	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금액의 5%
2002년	
500만원 이하	전 액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	500만원 + 500만원 초과금액의 45%
1,5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	950만원 + 1,500만원 초과금액의 15%
3,0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	1,175만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 10%
4,500만원 초과	1,325만원 + 4,500만원 초과금액의 5%

### ■ 경로우대 · 장애인 공제 확대

2001년	2002년
· 장애인 ·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- 대상자 : 장애인 및 65세이상 부양가족 - 공제액 : 연 50만원	공제액 : 연 100만원

### ■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확대

2001년	2002년
·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 - 생명 · 상해보험 - 손해보험 - 농협 · 수협 · 신협 ·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	「교원 · 군인 · 경찰 · 소방 · 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회」도 공제대상에 포함

### ■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

2001년	2002년
· 공제대상 의료비 - 진찰,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-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 -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	시력 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 포함)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*단, 안경 · 콘택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

### ■ 대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

2001년	2002년
· 공제대상 교육기관 -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(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, 신학대학 등 포함)	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"사이버 대학"을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가능

### ■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제도 신설

2001년	2002년
(신설)	·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- 공제대상교육기관 :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(국외 교육기관 포함) - 공제한도 : 1인당 연 150만원

### ■ 연금보험료공제 확대

2001년	2002년
·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(사용자부담금 제외) 및 공무원 · 군인 ·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의 50%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	납부액의 100%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
### ■ 근로소득세공제 한도 및 대상 조정

2001년	2002년
· 근로소득세액 공제 -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⇒ 45% -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⇒ 22만5천원 +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% - 공제한도 ⇒ 60만원 -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	- 공제율 ⇒ "좌 동" - 공제한도 ⇒ 40만원 -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

### ■ 기부금의 범위 조정

2001년	2002년
·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- 시설비 · 교육비 · 연구비 ⇒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- 장학금 ⇒ 근로소득금액의 10% 범위내에서 소득공제	·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시설비 · 교육비 · 연구비 외에 장학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· 근로소득금액의 10%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시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